

[별표]

과태료 부과기준(제26조제3항관련)

○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월평균진료비 부당청구액의 액수와 조사대상 의료보호비용총액에 대한 부당청구액의 비율을 각각 점수화하여 총점수를 산출한 후 총점수 1점당 10만원씩 부과한다(총점수중 소숫점이하 점수는 사사오입한다).

1. 진료비 부당청구액 점수환산법

- 가. 월평균부당청구액이 5만원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.
- 나. 월평균부당청구액이 10만원까지는 1점으로 하고 부당청구액이 5만원 증가시마다 0.5점씩 가산한다.
- 다. 증가액이 5만원미만인 경우에도 5만원으로 본다.
- 라. 총점수가 50점이상인 경우 50점으로 본다.

2. 부당비율의 점수환산법

- 가. 부당비율 = 부당청구액 / 조사대상의료보호비용총액 × 100
- 나. 부당비율이 0.5%미만인 경우 0점으로 한다.
- 다. 부당비율이 0.5%이상 1%까지는 0.5점으로 하고 이후 0.5%증가시마다 0.5점씩 가산한다.
- 라. 증가비율이 0.5%미만인 경우에도 0.5%로 본다.
- 마. 총점수가 50점이상인 경우 50점으로 본다.